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6.

발 의 자 : 김선교 · 서천호 · 구자근
김상훈 · 김성원 · 유상범
이현승 · 정동만 · 김승수
김위상 · 최수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출산, 고령화,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인해 빈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. 현행법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에 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소유자에게 철거·개축·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(개축·수리 제외)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“필요한 조치” 및 “정당한 사유”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, 철거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“필요한 조치”와 “정당한 사유”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

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함으로써,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의5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5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의5(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) ①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5조의5(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